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70

제안연월일 : 2024. 11.

제 안 자: 교육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상정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	발의일자 (제출일자)	상정
코 - O - 이 정 U	제1032호	정부	2024.6.27.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024.8.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363호	정부	2024.7.29.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4.)
근 1 / 11 중 답은 단	제2781호	문정복의원	2024.8.13.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 (2024.9.24.)

- 나.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4.10.29.)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다.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 감소와 최근 주택 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 요율과 100 가구로 명시된 세대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요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0.8%에서 0.4%로 낮추고, 부과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부과 대상 및 정도를 완화함(안 제2조, 제5조, 제5조의2).
- 나. 학교용지 확보시 비용부담과 동일하게 학교 증축시 비용부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6조).
- 다. 시·도지사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상황 '보고'를 '통보'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5조의4제5항).

법률 제 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100세대"를 "300세대"로 한다.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면제할 수 있다"를 "면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 중 "8"을 "4"로 한다.

제5조의4제5항 중 "보고"를 각각 "통보"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중 "시·도는 제4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부과·징수 및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제5조 및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로 분양공고 승인된 개발사업분(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이 법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	2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	
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	300세대
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	
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	
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	
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	
다.	
가. ~ 저. (생 략)	가. ~ 저.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부담금을 <u>면제할 수 있다</u> .	<u>면제하여야 한다</u> .
<u>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u>	<단서 삭제>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 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 4. (생략)
- ⑥ (생략)
-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 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다.
 - 1. 공동주택: 세대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
 - 2. (생략)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 제5조의4(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 계의 설치) ①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계의

- 1. (현행과 같음)
-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 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 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 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 위의 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3. 4. (현행과 같음)
- ⑥ (현행과 같음)
-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2	 	 	

- -----4
- 2. (현행과 같음)
- 계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5	 	 	 	 	 	 	-

운용 상황을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고받은 내용을 교육부장관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생 략)

② 시·도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제5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할수 있다. 이 경우 학교 증축 경비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게 사가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신 설>

<u>통보</u> <u>통</u>
<u>보</u>
<u>.</u>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1항
<u>시·도의 일반회계와 제</u> 5
조의4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
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후단 삭
<u>제></u>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을 각각 시·도
의 일반회계와 제5조의4에 따
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
산에 계상하여 시·도교육감의
전출요청이 있는 때로부터 다
음 회계연도 내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